#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 차례



I . 개 요
1.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의 의의 3
2. 법적근거 3
3.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의 및 유형4
4. 용어정의7
5. 업무흐름도9
Ⅱ. 사업운영절차
1. 참여자 선발 준비12
(1) 개별사업 지침 마련12
(2) 일모아 시스템 가입13
(3) 사업정보 등록 및 승인요청14
(4) 모집공고 등록15
2. 참여자 선발
(1) 참여신청 접수16
(2) 참여자격 확인20
❶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20
<b>②</b> 중복·반복 참여제한27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
④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3) 기타 고려사항 37

# 차례



3. 참여자 관리40
(1) 근로조건 준수40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조치사항 준수43
(3) 참여자 현황 관리46
4. 참여자 후속지원 : 민간일자리 이동지원48
Ⅲ. 기타 조치사항
1.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관련 안내 54
2. 기타 유의사항55
[붙임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및 유형56
[붙임2] 중앙부처 인턴십 사업 민간위탁 운영 가이드라인62
[붙임3] 2025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63
[붙임4]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서74
[붙임5] 구직등록방법 안내77
[붙임6]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총괄부서 목록78
IV. 각종 서식 ············79

## 직접일자리 합동지침 주요 변경 사항

- ① 중앙부처 인턴십 사업 가이드라인 신설(12p, 62p)
- '직접일자리'로 분류되고 있는 인턴십 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 가이드라인 신설 ⇒ 소관부처는 해당내용을 개별사업 지침에 반영하여 운영
- [2] 2025년 취업취약계층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중위소득 60%) 기준표(21p)

(단위: 원)

기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0%)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기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60%)	4,838,883	5,393,057	5,947,231	6,501,404	7,055,578

#### ③ 사업별 취업취약계층 목표비율 설정(25p)

- ㅇ(원칙) 해당 사업 3년 평균 참여율 110%
- (기존사업)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중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3년 평균 참여율 100%로 조정
- (3년이내 사업) 세부유형(노동시장이행형, 사회봉사복지형)을 반영하여 연차별로 다음과 같이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 3년 평균 참여율 110%(또는 100%) 적용

(50%) 1,2차 연도	· 동일 세부유형 참여 비율 평균(50%)	-	` '	-	(단 하향 조정 대상 사업으로 분류된 경우 100%) 이후
· 동일 세부유형 참여비율 평균	· 1차 연도 해당 사업 참여 실적(50%)		· 1차, 2차 연도 해당사업 참여실적 평균(70%)		· 해당사업 3년 평균 참여율 110%

<sup>\*</sup> 동일 세부유형 참여비율 평균: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세부유형 참여비율 전체 평균 산출값임

#### 4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조정(28p)

구분	사업명	사유
추가	임도시설(임도관리단)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수반

#### 5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32~33p)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직접일자리사업 조정

구분	사업명	사유
제외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상류유입하천쓰레기수거(금강))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사업종료

####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제한기간 신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미 참여시 2년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6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중위소득 **70%)**(36p)

<2025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기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70%)	1,674,409	2,752.861	3,517,747	4,268,441	4,975,734
기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70%)	5,645,364	6,291,900	6,938,436	7,584,972	8,231,508

<sup>※</sup> 산림재해일자리는 내역사업별로 목표비율 세분화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개 요



## **1**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의 의의

-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이하 '합동지침')은 직접일자리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운영 시 고려할 공통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 ㅇ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적용됨
  - \* (중앙부처) [붙임3]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63p) 참조
- □ 동 합동지침은 직접일자리사업에서 <sup>①</sup>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sup>②</sup> 반복참여자를 최소화하며, <sup>③</sup> 사업참여 종료 후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직접일자리사업 소관 부처 및 자치단체에서는 합동지침의 주요 내용을 사업 계획 및 개별 사업지침에 반영하되,
- 개별사업 운영에 필요한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 합동지침 적용대상 사업이라도 사업 운영 시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개별사업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외 유형이라도 합동지침 및 일모아 시스템 관련 내용 참고 가능

# 2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 □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의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 3

#### 직접일자리사업 정의 및 유형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

-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 o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sup>\*</sup>은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으로,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으로 관리
  - \* 자치단체 대응투자 사업, 지특회계 사업 등

#### ①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의

- o 취업취약계층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금 직접 지원)
  - \* (참여대상) 취업취약계층의 우선 참여 장려(사업별 참여 비율 목표치 제시) (참여기간) 통상 1년 미만 (최장 2년) (제공업무) 해당 업무가 법령·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재량사업의 한시적 업무
  - 낮은 실업소득 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노인** 등 특정한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일자리사업을 포함 (노인일자리사업)
  -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재능기부·사회공헌 등)

#### 2 직접일자리사업의 세부유형

- ① (노동시장이행형)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고유업무(예: 지방자치법 제13조 등) 수행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도 참여요건(학위·자격증 등)이 요구되기도 함
- 또한 청년·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일 경험 습득·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단기(1년이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지자체·공공 기관의 고유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단, 고유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 ② (사회봉사·복지형)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사업
  - 또한 퇴직자·청년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로 활동 실비를 지원

#### ③ 직접일자리에 포함되는 사업(예시)

- ※ 사업담당자는 아래 사업예시를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노동시장이행형) 취업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 전문분야 강사 지원사업 (지속·반복 참여가 불가능해야 함), 청년들 의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보조(일경험) 사업, 기업 수요에 맞춘 청년·중 장년·여성 인턴십 운영 등
- (사회봉사·복지형) 저소득층 어르신 일자리, 중장년 경력 활용 봉사활동
   사업, 어르신 재능기부 사업, 청년 자원봉사활동 사업 등

#### 4 직접일자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예시)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 종합복지관, 공립 보육시설, 공립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및 상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등
- \* 공공청사 청소용역, 지역 하수처리장 운영, 군민회관 운영, 공설운동장 관리, 철도 건널목 위탁관리 등
- \* 다만,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의 인건비·관리비 등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고용 서비스 유형에 포함
-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을 채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 \* 여권민원안내도우미, 민원안내도우미, 방역사업, 교통단속 등 법령에 규정되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지방자치법」제13조 참조)

- o 특정 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
- \*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하수관로조사,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등
- \* 단기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실업자를 채용하는 일회적, 비정기적 통계조사는 일자리사업에 포함
- o 각종 **산업육성, 공사 시행 및 투자유치** 사업
- \* 바이오산업 육성, 그린에너지사업화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사 신축, 우량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유치 등
- **박람회·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 개최를 위해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 \* ○○축제, ○○박람회 등 (단, 취업박람회는 고용서비스에 포함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에 대한 상세 설명은 [붙임1] 참조

## 4 용어 정의

- ① **일모아 시스템**: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의5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하나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등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시스템
- ② 실업상태 : <sup>①</sup>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적이 없었던 자 또는 <sup>②</sup>선발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상태인 자 또는 <sup>③</sup>폐업자영업자 등을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봄

#### ③ 중복 · 반복 참여

- 1) 중복참여 : 동일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 2) 반복참여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 4 사업담당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
- 1) 중앙부처 사업담당자: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담당자로서 해당 일자리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 \* 일모아 시스템상 '부처 사업관리자'
- 2) 자치단체 사업담당자: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담당자로서 해당 일자리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담당
  - \* 일모아 시스템상 '지자체 사업등록관리자'
- 3) **수행기관 담당자**: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참여자선발·관리, 사업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
  - \* 일모아 시스템상 '사업담당자'

- 5 사업 참여자 : 업무 흐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1) 사업 신청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참여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한 자
- 2) 사업 참여자 : 사업 신청자 중 수행기관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
- 3) 사업참여 종료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종료자

#### 6 기**타**

- 1) 별다른 언급 없이 '사업'이라고 하면 직접일자리사업을 의미
- 2) 합동지침은 '동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을 의미

# 5 업무흐름도

	단계	내용	담당자
		·개별사업 지침 마련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 <b>일모아 시스템 가입</b> 시스템 가입 및 본인의 사업관리권한 신청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수행기관 담당자
1	선발 준비	· <b>사업정보 등록 및 승인요청</b> 고용노동부에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 <b>모집공고 등록</b>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채용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	수행기관 담당자
		· 참여신청 접수 선발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수령하는 과정	수행기관 담당자
2	참여자 선발	· 참여자격 확인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중복반복 참여제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 여부 확인 · 참여자 선발	
3	참여자 관리	· 근로조건의 준수 참여자가「근로기준법」제2조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최저임금, 근로 시간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발생	
		· <b>참여자 현황 관리</b> 중도탈락자 등 참여자 현황을 매월 주기적 으로 시스템에 입력	수행기관 담당자
4	참여자 후속지원	· 민간일자리 이동지원 사업참여 종료(예정)자 중 민간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구직등록신청서를 제출받는 과정	수행기관 담당자
5	일자리사업 평가 준비	· <b>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협조</b>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참여자 정보 제출 및 기초평가 보고서 검토 등에 협조	중앙부처 담당자

 $\prod$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사업운영절차



### 1 참여자 선발 준비

#### □ 개별사업 지침 마련

개별사업 일모아 사업정보 모집공고 시스템 가입 등록 · 승인 지침 마련 등록

- ❖ 합동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설계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개별사업의 목적·특성에 맞게 사업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사업매뉴얼에는 <sup>①</sup>사업개요, <sup>②</sup>주된 참여대상, <sup>③</sup>참여절차 및 제출서류, <sup>④</sup>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의 내용을 반영
- 중앙부처 인턴십 사업의 경우 소관 부처에서는 붙임2 수행기관 가이드라인를 참고하여 개별 사업지침에 동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 o (사업개요) 사업목적·내용, 계획인원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
- o (주된 참여대상) 사업별 업무내용·직무특성에 따라 참여대상 및 자격 요건을 결정하되,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및 참여목표비율을 반드시 명시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선발과 관련해서는 지침 21~26p 참조
- o (참여절차 및 제출서류) 선발 기준·절차, 제출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확정 · 안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양식은 서식1(81~84p) 참조
- o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참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근무장소·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 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개별사업 지침에 반영
- 특히, 사업 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 등이 준수되도록 유의
- \*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지침 40~45p 참조

#### ○ 기타 고려사항

- (지역별 배분 고려) 지역별 배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역별 일자리수요, 인구 규모, 고용동향 등을 고려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최소화
- (전달체계 관리) 정책 대상집단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선택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참여자 관리를 권장

#### ② 일모아 시스템 가입



- ◆ 신규사업으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려는 사업담당자가 일모아 시스템 가입 후 본인의 사업관리 권한을 신청하는 과정
- o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일모아 시스템을 활용하여 참여자를 관리 하려는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및 수행기관 담당자는 일모아 시스템(www.ilmoa.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관리 권한 신청
  - \* (중앙부처) [붙임3]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63p) 참조

#### <담당자별 신청 필요한 권한>

- ① 중앙부처 담당자 부처 사업관리자 ② 자치단체 담당자 지자체 사업등록관리자
- ③ 수행기관 담당자 '사업담당자'
-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등록)관리자가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수행기관 조직도를 등록하여야 수행기관의 사업담당 권한 부여가 가능
- o 다만, 별도 참여자 관리 시스템이 있는 중앙부처 사업담당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등을 위해 일모아 시스템에 정보 연계를 요청
  -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 제5항 제3호 내지 제4호
- ※ 일모아 시스템에 1개월 이상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가입 정보가 삭제되므로 회원 재가입 필요

#### ③ 사업정보 등록 및 승인요청



- ❖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기본 정보 및 수행기관 체계도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
- o (중앙부처 담당자)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로 사업설명서\* 및 수행 기관 체계도를 첨부하여 사업승인요청 공문 발송
  - \* 사업담당자 이름 · 연락처, 사업규모(예산), 사업목적 · 내용, 주된 참여자 등의 내용 포함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승인 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업정보 및 수행기관을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
- ※ 추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신설·변경된 사업은 사업관리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기업 일자리지원과)와 사전 협의 필요
- o (자치단체 담당자) 일모아시스템 '사업기본정보등록(지자체)'에서 메뉴에서 사업등록 후 '사업설명서조회(지자체)'에서 승인요청'
- 광역자치단체 일자리총괄부서(붙임6, 78p) 담당자는 소속 기초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목록 및 사업계획서 등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 송부(1분기)
- \* 제출된 사업목록을 토대로 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 등을 선정하게 되므로, 소속 기초 자치단체 등의 일자리 사업이 해당 목록에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
- ※ 일모아시스템 사업 승인요청 시 예산유형(국비 매칭 여부 등), 사업규모(예산, 인원)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며,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참여자 이력관리 등을 위해 '계속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 합동평가는 일모아시스템 내 '합동평가실적' 탭에 표출되는 실적으로만 평가가 이뤄지며, 해당 탭에서 실적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① 관리년도(2025년), ②등록 상태('승인'), 고용노동부 관리('관리')로 체크되어 있어야 함

#### 4 모집공고 등록

개별사업 지침 마련 → 일모아 시스템 가입 → 사업정보 등록 **무집공고** 등록

- ❖ 수행기관 담당자가 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신청자가 알아야 할 채용관련 정보를 온 ·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과정
- \* 모집공고문에 '직접일자리사업'임을 명시

#### ㅇ 개요

- 모집공고에는 <sup>①</sup>모집공고명, <sup>②</sup>모집직종, <sup>③</sup>직무내용(간단한 사업내용 포함), <sup>④</sup>모집기간 및 인원, <sup>⑤</sup>사업참여기간 <sup>⑥</sup>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필수사항을 반드시 반영(사업담당자 이름·연락처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입력)
- ※ 위에 안내한 필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모집공고는 고용24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서 조회가 제한
- 모집공고는 일모아 시스템 또는 자체 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 가능
- \* ① 일모아 시스템에 모집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② 일모아 시스템과 자동연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모집공고를 등록하지 않아도 "고용24 > 채용정보 > 일자리찾기 >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 모집공고가 자동으로 연계"
- 한편, 모집 공고기간 및 신청자 부족 시 재공고 여부 등은 사업담당자 및 수행기관에서 사업별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 조치사항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의 '신청접수 관리 모집공고 등록' 메뉴에서 참여자 선발 접수 마감 10일 전까지 '모집공고' 등록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자체 시스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자체 시스템 또는 부처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를 게시

#### ❖ <참고> '25년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 통합공고('24.12월 중)

- ㅇ (목적)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괄 홍보를 통해 대국민 접근성 제고
- ㅇ (대상사업)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
- o (신청방법) 중앙부처 사업담당자는 양식(서식6, 91p)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기업 일자리지원과)에 신청
  - \*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 o (공고방법) 고용24 공지사항에 '25년 직접일자리 사업 통합공고'로 게시 예정

## 2 참여자 선발

#### □ 참여신청 접수



- ❖ 수행기관 담당자가 참여 신청자로부터 선발 과정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출받는 과정
  - \* 신청서 등 필요 서식에 '직접일자리사업'임을 명시

#### ㅇ 개요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표준서식(서식1, 81~82p)을 참고하되, 각 사업별로 참여자 선발에 필요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사업 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별도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관 주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해 사업주관기관에서 5년 이상의 기간 중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동의일로부터 10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동의를 받은 참여자 개인식별정보, 취업취약계층 항목 등에 대해서는 일모아 시스템 입력 등을 통해 동의기간 동안 이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 선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참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일모아 시스템으로 조회가능한 사항은 일모아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증빙자료 수집으로 신청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 불필요한 서류 요청 사례

- 수행기관에서 참여 신청자의 실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의 구직등록 확인증을 필수 제출서류로 정함. 고령자, 장애인, 원거리 구직자(대중교통 불편 민원인) 등이 구직등록확인증 발급만을 위해 고용센터를 내방하는 등 불편을 초래
- → 일모아시스템에서 참여 신청자의 "구직신청 여부", "고용보험 가입(취업) 여부"를 직접 조회하여 참여 신청자의 실업여부를 확인하여 불편 최소화

<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등 연계]

구분		확인 가능 정보	기준	원천기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신청자	복지부
		장애인 여부	신청자	복지부
		한부모가정 여부	신청자	여가부
		자활급여대상자 여부	신청자	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여부	신청자	복지부
자격	시하다	장애수당대상자 여부	신청자	복지부
정보		우선돌봄대상자 여부	신청자	복지부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신청자	고용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신청자	고용부
	고	용보험 가입(취업)여부	신청자	고용부
		휴폐업자 여부	신청자	국세청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취업프로그램 이수여부	신청자	고용부·복지부 ·여가부
	Ę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행안부
소득 정보		군인연금 수급 여부		국방부
-	사학연금 수급 여부		신청자	교육부
 재산	부동산(	토지,주택,건축물) 합산금액	신청자가구	행안부
정보 		자동차 금액	신청자가구	국토부

####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구분	확인 가능 정보	기준	원천기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신청자	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청자	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신청자	복지부
자격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자	여가부
지역 정보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신청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0 <del>T</del>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국세청
	사업장휴폐업정보	신청자	국세청
	자활근로자확인서	신청자	복지부
	차상위대상자증명서	신청자	복지부
	국민연금소득월액 임의(임의계속) 가입여부	신청자가구	국민연금공단
소득	소득금액증명	신청자가구	국세청
정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소득금액	신청자가구	복지부
	고용산재보험보수월액	신청자가구	고용부
	군인연금 소득정보	신청자가구	국방부
공적	사학연금 소득정보	신청자가구	교육부
이전	공무원연금 소득정보	신청자가구	행안부
소득	별정우체국연금 소득정보	신청자가구	과기부
	국민연금 소득정보	신청자가구	국민연금공단
기타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자	행안부

#### ○ 공공 마이데이터(Mydata)란?

-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기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이용 하여 다양한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 \* 국민이 동의한 항목(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마이데이터 유통센터를 통하여 일모아시스템 으로 수신(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 ○ 법적근거

-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의 열람(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전자정부법 제43조의2)
- \* 민원인이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기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요구 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 민원인이 행정정보보유기관에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의 민원처리에 이용되도록 요구 시 보유기관은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 제공

#### ○ 조치사항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참여 신청접수에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및 신청절차 등을 개별사업 지침에 반영
- · 특히 <sup>①</sup>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보유·이용주기, <sup>②</sup>제공기관 및 제공목적, <sup>③</sup>제출서류 보관 주기, <sup>④</sup>관련 전산망(일모아 시스템)과 연계 등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

- · 또한 수행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령·보관 등을 철저히 안내
- \*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참여자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며, 오프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별도의 동의서(81~82페이지)를 추가 수령 필요
- (수행기관 담당자) 필요한 신청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안내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수령시에는 자격·소득·재산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 · 미제출시에는 참여자 선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
- \* 제출서류의 보관주기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중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참여신청 서류 접수 관련 세부업무처리 절차(수행기관 담당자) >

#### ① 일모아 시스템 사용 시

o 온라인 신청의 경우와 그 외 접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수행기관 담당자의 업무처리 방식이 다름

#### ① 온라인 신청접수

- A. 수행기관 담당자가 모집공고 등록 시 '온라인 신청'을 체크
- B. 신청인은 고용24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서류접수
- C.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 신청서, 제출서류 등이 일모아 시스템 '신청접수관리 - 신청자 관리 - 신청자 조회'에 연계
- D. 수행기관 담당자는 '신청자 조회' 화면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 또는 '신청서 반려' 선택
  - \* 신청인은 고용24 민원신청현황에서 접수상태 확인 가능
- E. 신청서 등록 후 필요한 경우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출력 가능

#### ② 그 외 접수방법

- A. 온라인 접수를 원하지 않는 수행기관 담당자는 직접수령 등을 통해 선발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
- B. 일모아 시스템 '신청접수 관리 신청자 관리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정보 등록
  - \* 신청자 정보는 한 명씩 개별로 입력하는 것과, 지정된 엑셀 양식에 맞춰 여러 명을 한번에 입력하는 것 모두 가능

#### ②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o 일모아 시스템 외의 별도 시스템 또는 직접 수령 등을 통해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수령 가능

#### 2 참여자격 확인

참여신청 접수 **참인** → 기타사항 → 참여자 확인 확인 → 선발

- ❖ 신청자의 <sup>①</sup>취업취약계층 여부, <sup>②</sup>중·반복 참여자 여부, <sup>③</sup>소득·자산기준 초과자 해당여부, <sup>④</sup>기타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사업별 자격요건 해당 여부를 파악하여 신청자가 적합한 참여자인지 확인하는 과정
  - \*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는 필요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참고하여 개별 사업계획 및 지침에 소득·자산 제한기준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이 유리하도록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ㅇ 개요

-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소득보조, 근로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담당자는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및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

#### ○ 조치사항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개별사업지침에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및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중앙부처는 25p 참고, 자치단체는 50% 이상)을 명시하고 수행기관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 으로 점검
- \*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매년 1~4월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 달성여부'가 평가지표로 반영
- \* 고용노동부는 주기적으로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별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점검하여 부처에 송부하여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을 독려할 계획
- (수행기관 담당자)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18p~21p)을 참고하여 취업취약계층 여부를 판단\*하고,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및 사업별 취업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 달성 등을 위해 노력
-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중 ①'가~나' 및 '사', ②'다'의 일부 정보의 경우에는 일모아 시스템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령 필수)

####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 가. 저소특층 : 가구원(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u>기준 중위소득</u>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기관별사업선발템 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 "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단,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조사 실시
  -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여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 예: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359,59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기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0%)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60%)	4,838,883	5,393,057	5,947,231	6,501,404	7,055,578

- 나.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항)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sup>①</sup>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sup>②</sup>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sup>③</sup>구직등록을 마친 자
  -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sup>①</sup>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sup>②</sup>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sup>③</sup>장애·질병이 있는 동거 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 A 미혼여성
  -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제출서류

		±1 =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	록등본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서타니하	군복무	복무확인서		
선택사항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 자. 위기청소년 : <sup>①</sup>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sup>②</sup>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sup>③</sup>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sup>④</sup>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 관련시설(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타. 노숙인**: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 '25년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목표비율 >

#### ㅇ(원칙) 해당 사업 3년 평균 참여율 110%

- (기존사업)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중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3년 평균 참여율 100%로 조정
- (3년이내 사업) 세부유형(노동시장이행형, 사회봉사복지형)을 반영하여 연차별로 다음과 같이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 3년 평균 참여율 110%(또는 100%) 적용

1,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이후
(50%)	-	· 동일 세부유형 참여 비율 평균(50%)	-	· 동일 세부유형 참여 비율 평균(30%)	-	(단 하향 조정 대상 사업으로 분류된 경우 100%)
· 동일 세부유형 참여비율 평균		· 1차 연도 해당 사업 참여 실적(50%)		· 1차, 2차 연도 해당사업 참여실적 평균(70%)		· 해당사업 3년 평균 참여율 110%

<sup>\*</sup> 동일 세부유형 참여비율 평균: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세부유형 참여비율 전체 평균 산출값임

(단위 : %)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취업취약계층
	1.10	· 11 · 16 0( 11 - 16 0)	참여목표율
1	국유청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지원(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25.0
2	국유청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국가유산 산업 인턴지원)	26.4
3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원(도시재생 청년인턴십)	24.9
4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 기예술인)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49.6
5	문체부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20.1
6	문체부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45.2
7	문체부	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 원 지원)]	53.8

8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7.2
9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 외 나머지 사업) - 공공형	100
10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 외 나머지 사업) - 민간형/사회서비스형	54.9
11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100
12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70.0
13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41.0
14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도시숲 정원관리인)	63.7
15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73.8
16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74.2
17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72.0
18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보호지원단)	94.1
19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7.3
20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77.4
21	산림청	임도시설(임도관리단)	85.0
22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인 턴운영)]	29.6
23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 경쟁행위 단속 지원(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100
24	해경청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국민참여형연안안전활동 (민간연안안전지킴이)]	47.6
25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52.9
26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자치단체 지원)	60.1
27	환경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59.1
28	환경부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99.5

#### ❷ 중복 · 반복 참여제한

#### ㅇ 개요

-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직접일자리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반복참여를 제한
- 한편, 사업담당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정부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참여 종료(예정)자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할 필요
-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 실업급여 수급 → 직접일자리사업 재참여 등

#### ○ 중복참여 제한

- (제한대상 사업)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시간제·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한에 차등을 둠

구 분	분류 기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나 다만,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 이더라도 전일제로 분류
- \* '22년까지 소득보조형으로 분류된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활사업, 숲가꾸기,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 (제한내용)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하나,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 ❖ 중복참여 판단 예시

-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 ○ 반복참여 제한

- (제한대상 사업)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특성 및 인적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복참여를 허용
-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연번	반복참여 허용 사유	해당 사업
1	노인, 자활지원대상 등 반복참여가 필요한 소득보전 일자리	자활사업
2	자원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자리로, 실비 수준의 금전만을 지급받는 일자리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3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 되는 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숲가꾸기(숲가꾸기 패트롤) 임도시설(임도관리단)

####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 <sup>①</sup> 65세 이상 고령자<sup>\*</sup>, <sup>②</sup>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 능력·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
- \*\* 수행기관에서 신청자의 사정을 감안해 판단(추가 증빙서류, 면담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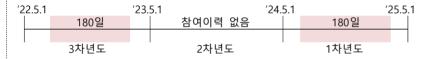
- (제한내용)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해당연도 신청자가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일수 및 참여기간 중의 주말·공휴일·병가일·휴가일·경조일·훈련일 등을 모두 합산

#### ❖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5.5.1일인 경우)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4.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2	2.5.1	′23.5.1		′24.5	5.1		'25.5.1
	참여이력 없음		179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 (재참여요건)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붙임4, 68p 참조)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만 사업 재참여 가능

#### ❖ 반복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음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실업급여와의 관계)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붙임3, 63~64p)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 A.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B.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사업 참여 가능

####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충점의 일정비율을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 재공고 시 반복참여자를 채용할지 여부, 감점비율 등은 사업담당자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20%이상 감점하길 권고

#### ○ 조치사항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 제한규정을 개별사업 지침에 명시하고, 해당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 매년 1~4월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반복참여율'이 지표로 반영
- (수행기관 담당자) 일모아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복참여자 및 반복 참여자 확인, 반복참여 제한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

#### ① 중복참여자 및 반복참여자 확인

-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선발관리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확인 후 신청인이 중복참여자 또는 반복참여자에 해당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일모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를 확인
- \* 별도 프로그램(메기웨어 솔루션) 설치 필요<u>(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 043-870-8818 또는 8833)</u>

#### ② 반복참여 제한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 확인

-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고용24에서 구직등록한 내역, 취업지원프로 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가능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구직등록필증 또는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한 내역,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등 수령
- \* 단,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 지원하거나, 참여자의 경력·연령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자와의 추가 면담 등 필요

####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 ㅇ 개요

- 직접일자리 참여자가 직접일자리에 머물지 않고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를 강화
-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직접일자리 재참여를 희망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참여토록 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취업이 안될 경우 직접일자리 재참여가 가능하도록 개편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 연계대상 및 직접일자리 재참여 요건 등

- (연계대상자) '23년, '24년도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심 사업(아래 표 참조)의 참여자
  - \*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자라 함

#### 해당 직접일자리('24년 9개 사업)

- ① 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 ③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 ②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④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 영) ④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 ⑥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⑤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 ⑦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 ⑧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 ⑨ 국가유산 보존관리 정책강화(국가유산산 업인턴지원)

#### 해당 직접일자리('23년 12개 사업)

- ① 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 ③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 ⊇ ભે≀
- ②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 ④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 ⑤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 ⑥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⑧ 상수원관리지역관리
- ⑦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 (쓰레기수거사업(한강))
- ⑨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 ⑩ 상수원관리지역관리 (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거(금강))
- ①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 ①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문화유산산업 인턴지원)

- (직접일자리 재참여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되어야 직접일자리사업에 재참여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미참여하거나 중도탈락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직접일자리 재참여 2년 제한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선발 예시

- · '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12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 참여 종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 또는 중도탈락 → '24년도 타 또는 동일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25년도 타 또는 동일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12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 참여 종료  $\rightarrow$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상 참여**  $\rightarrow$  '24년도 타 또는 동일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p28 하단부분)와의 관계) 65세 이상 고령자 등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는 인적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재참여를 허용

####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p28 하단부분)

- ① 65세 이상 고령자\*,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 능력·질병 정도 등에 따라 재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 (반복참여 제한내용(p29)과의 관계) 최근 3년 중 2년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정상적으로 참여(중도탈락 제외)하고, 제한기간 1년이 종료된 후 참여 가능
- ·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 순위로 선발하되, 후 순위자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다른 후 순위보다 우선 선발\*
- \* 직접일자리 참여이력이 없는 취약계층만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직접일자리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정상적 으로 참여한 자를 우선 선발

- (실업급여와의 관계)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하려는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를 증빙해야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미 이수시 참여를 제한
- (재참여 제한 예외) 직접일자리 참여이력이 없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자 중에서 모집인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 선발 가능

#### ❖ 참여자 선발 예시

- · 모집인원 100명중 200명 응시. 응시자 중에서 참여 제한이 없는 사람이 80명, 재참여 제한자(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자)가 120명인 경우
- 참여 제한이 없는 사람(80명)만으로는 모집인원(100명)을 다 채우지 못하므로, 부족한 20명을 재참여 제한자(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자) 120명중에서 선발가능

#### ○ 조치사항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에 대해 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정상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재참여가 가능하도록 (선발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 지침에 명시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 (수행기관 담당자) 직접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일모아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 여부 및 정상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
-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① "신청자 조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이력"에서 개별 확인,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사업 참여이력조회"에서 일괄 확인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일모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
- \* 별도 프로그램(메기웨어 솔루션) 설치 필요(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 043-870-8818 또는 8833)

- 일모아시스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로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서식 7, 94p)'를 제출받아 확인

#### (참고) 확인서 발급 요건

- •최근 1년 이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최소 I유형 9개월, II유형 6개월)하여 정상적으로 종료
- \*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최소 참여기간 상관없이 정상종료로 간주
-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연락두절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제외
- 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포함) 취업지원활동 참여 등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것
- \* 취업지원활동의 예시: 집단상담·취업특강·채용박람회 참여, 취업지원기관이 알선한 직장에 면접 등 구직활동을 한 경우 등 (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활동은 제외)

#### ④ 소득 · 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ㅇ 개요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조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산을 보유한 자의 참여를 가능한 배제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 원칙

- 아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의 사업참여를 배제하여 운영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 소득· 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 후 채용 가능
  - \* 감점비율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20%이상 감점하길 권고
  - ※ 이 경우에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 ○ 대상사업

- <sup>①</sup>취득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또는 <sup>②</sup>취약계층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발급되는 자격증 등 제외
- · 중앙부처 : 숲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환경 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 · **자치단체** : 사업담당자가 대상사업 요건을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자산기준 초과자 선발배제 가능

#### ○ 제한대상자

- <sup>①</sup>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sup>②</sup> 4억원 초과 재산(토지· 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
  - < 2025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

기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70%)	1,674,409	2,752.861	3,517,747	4,268,441	4,975,734
기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70%)	5,645,364	6,291,900	6,938,436	7,584,972	8,231,508

-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u>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u>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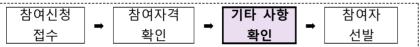
지역 구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공제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기본공제 예시> ○○광역시 거주 A 신청인의 가구원 재산조회 결과 재산(순자산)이 4억 5천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광역시 공제액 7,700만원을 공제하면, A 신청인의 재산(순자산)은 3억7천3백만원이므로 자산기준 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조치사항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에 관한 내용을 사업 지침에 명시하여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을 지원
- (수행기관 담당자) 신청인이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하여 개별사업 지침에 따라 참여를 배제하는 등 선발절차 진행
-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선발관리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확인 후 신청인이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에 해당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진행

#### ③ 기타 고려사항



-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하는 과정
  - ※ <u>개별사업 지침에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u>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

####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지원

- (개요) 참여자 선발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거나 이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
  - ※ 국가보훈관계법령 상 취업지원대상자 및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법률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4조

- (원칙)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에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 또한,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국가 유공자법」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 \*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원점수로 합격한 경우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 조치 사항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국가보훈관계법령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지원' 부분을 개별 사업지침에 반영
- (수행기관 담당자)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신청자가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자세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지원방안은 국가보훈관계법령 참고

#### ❷ 농촌 일손돕기 참여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농번기 일손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 기관(지자체 등)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sup>\*</sup>으로 운영
  - \* 파종기(3~4월), 수확기(9~10월) 등에 직접일자리사업 운영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

#### 4 참여자 선발



❖ 사업별 자격요건에 맞는 참여자를 선발하고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일모아 시스템 등에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

#### ㅇ 개요

- 선발 시점에 신청자 정보를 일모아 시스템 등에 입력하는 것을 권장하나,
- · 신청인원이 소수(10인 이하)인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신청 시점에 일모아 시스템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 시작일 이전까지 참여자 정보를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 참여자 정보는 한 명씩 개별 입력과 지정된 엑셀 양식으로 여러 명을 동시 입력하는 방법 모두 가능

#### ○ 조치사항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일모아 시스템에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개별사업 지침에 명시
- 수행기관 담당자는 늦어도 사업참여 시작일 이전까지 참여자 정보를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
  - \* 자체 시스템에 있어 일모아 시스템에 참여자 정보를 연계하는 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참여자 정보를 입력

## 3 참여자 관리

#### □ 근로조건 준수

# 근로 조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사항 준수

참여자 현황 관리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 되는 경우, 사업담당자는 아래의 근로조건 준수 의무 발생

#### ○ 대상 사업

- <sup>①</sup>정부·자치단체 및 사업 위탁기관에서 직접 사업 참여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며, <sup>②</sup>「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업
- ※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지원 등 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적절 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

#### ○ 주요 내용

#### ①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
  - ※ '25년 최저임금 : 시간당 10,030원 → 월급 기준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소정 근로 외의 임금 등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
-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24년부터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 '19~'23년까지는 매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해당연도 미산입비율 초과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예시: '23년은 최저임금 월환산액 2,010,580원 기준으로, 상여금은 5%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 < 연도별 월 환산액 미산입 비율 >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비율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②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근로기준법」제17조제2항)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 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함
-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명시사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 ①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취업의 장소와 종시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⑥번은 단시간 근로자만 해당)
- → 위반 시 항목당 과태료 50만원(1, 3, 6), 30만원(2, 4, 5)

#### ③ 근로시간(1주 최대 52시간)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각 기관은 법 위반이 없도록 조치 필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되며,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④ 임금명세서 교부

-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 적용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 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times$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거나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됨
- ①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설연휴 및 추석연휴 각 3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③ ① 및 ②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알(일요일 임시공휴일 제외)과 경치는 경우
- ④ ①②③의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그 대체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됨)
- ⑤ ①~④의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됨)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휴일대체'라 함)
- ※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반드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휴일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고지 하여야 함

#### ⑥ 고용 · 산재 보험 등 4대보험 가입 확대

- 모범적 사업주로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적용 제외자가 아닌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조치

#### ○ 조치사항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
- 또한, 표준근로계약서(서식3, 85p)를 참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 지침에 명시하고, 수행기관에서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조치사항 준수

근로 조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사항 준수

참여자 현황 관리

-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 되는 경우,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조치 의무 주체**가 되며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은 사망재해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활동이 필요**

####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❷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❸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조치사항

-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 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법 제2장)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5조~제24조)

등을 알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 (법령요지 등의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의 공무원 등 소속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법 제34조)

☐ (위험성평가) 각 작업별 어떤 유해위험이 있고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36조)

□ (아저보거교육) 아저보거교육을 실시하여 작업별 유해위험 내용. 대처요령

- □ (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 등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의한 위험, 위험장소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38조)\*
  - \* 필요한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 □ **(보건조치)** 사업주는 환기·채광·조명 등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법 제39조)\*
  - \* 필요한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 □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법 제54조)
- □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57조)
  - \* (보고대상 산업재해) ●사망자, ❷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 발생

#### 2)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와 조치사항

- □ (안전·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법 제4조)
  -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 도록 하는 핵심 규정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근로조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조치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 ③ 참여자 현황 관리

근로 조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사항 준수

참여자 현황 관리

❖ 중도탈락자, 중복참여 의심자 등 주기적으로 참여자 현황을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 ㅇ 개요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가 수행기관별 참여자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서는 일모아 시스템 등에 중도탈락자 등 참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매월 업데이트 해야 하며,
- 사업 운영 중 중복참여 의심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임금 회수 등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

#### ○ 조치사항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매월 일모아 시스템 등에 참여자 현황을 입력할 것을 개별사업 지침에 명시하고, 수행기관에 주기적으로 독려
- \* 고용노동부는 매분기마다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입력현황을 체크 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안내·일모아 시스템 입력 등을 독려할 예정
- (수행기관 담당자) 중도탈락자 등 현황을 시스템에 적시에 입력하고, 중복참여 의심자 발생시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

#### ① 중도탈락자 발생시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참여자관리 중도이탈관리" 메뉴에서 중도탈락자 현황을 매월 주기적으로 입력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자체 시스템에 중도탈락자 현황을 매월 주기적으로 입력, 일모아 시스템에 연계조치

#### ② 사업 운영 중 중복 참여 의심자 발생시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일모아 시스템의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토대로 실제로 중복참여 제한사업인지 확인
- \* 중복참여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일모아 시스템 접속 시 메인화면에 중복참여 의심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 A. 중복참여 의심 대상 사업이 간헐제나 시간제인지 여부 등을 검토
- B.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 또는 해당사업 수행기관에 중복참여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 C. 중복참여자로 확인된 경우, 중복참여자에게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해 의사를 파악
- D. 대상자의 의사 반영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참여 중단 조치 \*중복참여자의 임금 회수 등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처리 진행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자체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처리

#### ③ 사업 운영 중 반복 참여자 발견 시

- <sup>①</sup>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sup>②</sup>참여자가 반복 참여가 허용 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참여자 선발이후(또는 사업 운영 중)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
  - \* 중도탈락자의 임금 회수 등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처리 진행

#### 4 참여자 후속지원 : 민간일자리 이동지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예정)자가 보다 나은 민간일자리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ㅇ 개요

- 참여자가 계속해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자의 민간취업을 지원

#### ○ 지원 대상자

- ① 노동시장 이행형 사업 중도탈락자 또는 사업 종료 후 미취업자
- \*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취업자는 제외
- ② 사회봉사·복지형 사업 참여 종료(예정)자 중 민간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자
- ③ 참여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대상인 자로 제한기간 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로 참여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여야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 ○ 지원방법

- ① 사업 참여 종료(예정)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안내 문자 발송\*(종료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중도이탈자는 즉시)
- \* 일모아시스템 사용기관은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문자 발송 / 미사용 기관은 자체적으로 안내

#### \_\_\_ <안내 문자메시지 문구(안)>

<직접일자리 전체 참여자>

- ▶ (종료 1개월 전) 귀하께서 참여하신 사업이 1개월 뒤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나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추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a href="https://www.kua.go.kr">https://www.work24.go.kr</a>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사업 참여자>
- ▶ (사업 종료 시)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참여하신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반드시 참여 (고용24에 사전 구직등록 필수)한 후에만 직접일자리 사업(타 직접일자리 포함)에 재참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 사업종료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링크 추가 발송
- ② 지원 대상자가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확인결과 민간일자리 구직 의사가 있다면 ③번으로 이동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32p 참조)가 직접일자리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도록 반드시 안내
- ③ 민간일자리에 구직의사가 있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직지원 서비스 참여, 직업훈련 참여 유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 ④ 자치단체(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기관 등\*에서는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의 구직등록신청서(서식4, 88p)를 제출받아 구직신청을 수리하고, 취업알선 등 채용을 지원
  - \*「직업안정법」제3조 제2항 및 제4조의2
- ⑤ 구직등록신청서 수리가 어려운 수행기관의 담당자는 구직등록절차 (붙임5,77p) 및 가까운 고용센터 등을 사업참여 종료(예정)자에게 안내하여, 사업참여종료(예정)자의 민간취업을 지원

#### ○ 안내사항

지원대상 구분	조치사항
노동시장 이행형 사업 중도탈락 및 사업 종료 후 미취업자	· 고용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해외 취업서비스센터에서 구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붙임4, 71p)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취업지원 센터'로 안내 ※ 자세한 지원방안은 http://www.worldjob.or.kr 참고 ·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직등록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기관의 담당자의 경우,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의 구직등록신청서(서식4, 81p)를 제출받아 취업알선 등 채용을 지원 · 구직등록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참여자에게 고용24 가입 및 구직신청 방법 안내(붙임5, 77p)
사회봉사·복지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예정)자	· 민간일자리에 구직의사가 있는지 확인 후 구직의사 있는 참여 종료(예정)자에게는 구직 지원 서비스 안내(붙임5, 77p) ·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직등록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기관의 담당자의 경우,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의 구직등록신청서(서식4, 88p)를 제출받아 취업알선 등 채용을 지원 · 구직등록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참여자에게 고용24 가입 및 구직신청 방법 안내(붙임5, 77p)

지원대상 구분	조치사항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	· 반복참여 제한 관련 내용 및 민간일자리 이동지원에 대해 반드시 안내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참여자가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28p)	· 직접일자리 재참여 요건 및 국민취업지원 제도(붙임4, 74p)에 대해 반드시 안내

#### ○ 조치사항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민간일자리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별 사업 지침에 반영하고 수행기관에서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연계실적을 수행기관평가에 반영

- (수행기관 담당자)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민간일자리 이동지원과 관련된 사항 안내
- \*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1~4월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훈련·고용서비스 연계율'이 평가지표로 반영('22년~)
- 평가내용: 일자리사업 참여 후 훈련, 고용서비스 등 사업 참여자로 등록된 비율로 평가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되는 평가계획 등 참조)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 기타 조치사항



# 1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관련 안내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 (개요) 고용부는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에 대해 ① 성과지표 도출, ② 현장 모니터링, ③ 만족도 조사, ④ 전년도 (실)집행률 점검 등을 실시
- o (평가결과 활용) 사업별 평가보고서, 성과등급을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 ※ '25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일정, 대상사업, 성과지표 등의 내용을 담은 성과평가 세부계획은 '24. 12월 중 관계부처에 별도 송부예정

#### □ 각 부처 협조사항

- ㅇ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참여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제출 협조
- 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https://epas1.ilmoa.go.kr)을 각 부처 내부망을 통해 접속해 참여자 정보 제출 양식 다운 및 참여자 정보 업로드(일정은 별도 통보)
- ※ 위 기간 외에는 참여자 정보 업로드가 불가하니, 중앙부처 사업담당자는 사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참여자 정보 제출양식을 다운받은 후 양식에 맞게 참여자 정보를 취합, 기간 내 제출(일괄 업로드 가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epas시스템 사용문의: 043-870-8385(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

#### □ 참고사항

- ㅇ '21년부터 사업별 평가보고서(평가등급 포함)를 우리부 홈페이지\*에 대외 공개
- \* 우리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서 "일자리사업" 키워드로 검색

#### 2 기타 유의사항

#### □ 일모아 시스템 관련 안내

- ㅇ 일모아 시스템 입력 및 전산망 연계 관리
- '25년 직접일자리 사업운영을 위해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은 해당 사업, 사업관리자, 수행기관 담당자 등을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
- \* '24.12월부터 참여자 선발을 시작하려는 사업은 사업정보 사전등록 및 직접일자리 사업 통합공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와 사전 협의 필요
- 자체전산망 운영 사업은 자체전산망과 일모아 시스템 간의 연계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참여자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 ② 참여자 정보 적시 입력 관리(일모아 시스템)

- o 사업기가이 종료된 사업은 **참여자 정보 입력이나 수정을 제하**한으로써 참여 이력 데이터를 보존하고 참여자 적시 입력 의무 부여
  - \* 사업종료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만 입력・수정 가능토록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일시적 소급입력 허용
- o 일모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재정지워일자리 효율화에 기여**하거나 성과를 개선한 담당자를 일자리 유공 포상, 표창 대상자로 적극 추천

#### 붙임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및 유형

####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의의

o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 취업취약계층 범주 참고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①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② 노숙자
- ㅇ 우리나라는 당초 4가지 유형으로 일자리사업을 부류했으나. 2011년부터는 OECD 기준을 준용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
- '22년부터는 장애인 사업 특성을 고려, 기타 일자리사업과의 단순비교를 지양하고 별도 유형으로 분리하여 관리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류기준 변경 참고 2010년 이전 기준 2011년 이후 기준 2022년 이후 기준 •직전일자리창축 •직접일자리창출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일자리 나누기·지키기 │ ➡ │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고용촉진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교육 및 훈련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지원고용 및 재활

#### ② 유형별 일자리사업의 정의 및 예시

#### ● 일자리사업 / 非 일자리사업 구분

- o 노동시장의 효율적 작동과 불균형의 교정을 목표로 정부\*가 공적개입(public intervention)을 하여 목표집단을 선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
  - \* 중앙정부, 자치단체, 사회보장기금
- 즉, LMP에는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입 (interventions)을 의미하며, 선별하지 않는 방식(in a non selective way across the population)으로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일반적 재정정책과 구분됨
- 목표집단은 <sup>①</sup>실업자, <sup>②</sup>위험한 상황에 처한 취업자(employed at risk), <sup>③</sup>그 외 (노동시장에 참여가 곤란한) 비경제활동인구(inactive) 등
- o 다만, 위 예시와 다른 집단의 고용을 촉진하거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일자리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
  - \* (예) 고용위기를 예방하는 목적의 사업주 채용보조금 제도

#### 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공적 개입

- 목표집단을 지원하는 효과는 있으나 별도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개입
- \* (예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장애인 의무고용제
- 목표집단이 불명확한 지원
- \* 실업자 채용 조건이 없는 창업소기업 채용지원금
- \* 복지에서 일로의 이행(welfare to work)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연계 급여(in-work benefit, 세금공제 포함) (저임금근로자 지원)

#### 직접일자리사업

o 직접일자리사업 정의 및 유형(4~6p) 참조

####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 실업자 및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역량향상 및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이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러는 사업
- (재직자 훈련) 이직이 잦고 재직기간이 짧은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구직자 훈련)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을 제공하는 사업
- \* 특정분야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단기(1년 이내)과정 수료 후 취업지원이 연계되는 경우(예: 연계기업 취업 제공 등)에만 구직자 훈련에 해당
- \* 상시근무가 곤란한 일부 특수직무(문화·예술·관광·건설 등)의 경우, 관련 경력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정책대상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인 경우 구직자 훈련에 포함(MICE산학연계 일자리창출 등)
- (일학습 병행)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 병행 제공을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일터기반 학습지원 사업
  - \* ① 기업은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내용·교육 운영방법 설계
  - ② 기업은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근로자(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③ 산업현장 전문가 등은 학습근로자가 습득한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도제자격 부여

#### ② 고용서비스

- 노동시장의 빈 일자리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 취업취약계층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사업
-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 대상 취업·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및 직업 ·진로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인프라 사업도 포함
  -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워받는 기관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 참고 통합형 일자리사업 관련 참고사항

- 훈련-구직알선-장려금 등 **多 유형에 걸친 사업**은 원칙적으로 **고용서비스로 분류**
- 다만 긴밀하게 연계운영되고 있으나, 각 지원내용이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사업별로 유형구분을 하여 분류
- \* (예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서비스"로 구분 저소득층, 청년 등에게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연계 및 구직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 알선, 구직기회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휴련과정 소개, 상담, 사례관리, 그 밖의 지원 서비스
  - \* 장애인·산재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재활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포함
- (고용정보 및 인프라) 노동시장 정보, 직업·진로정보 제공, 고용행정 또는 고용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전산망, 고용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업
- \* 자치단체별 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 운영사업도 포함
- (역량강화) 취업을 위한 기업탐방, 집단상담, 교육사업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 (기타) 출소자 등 대상이 특수한 계층에게 컨설팅,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사업담당자는 아래 사업예시를 참고하여 고용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ㅇ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 의학적 재활프로그램
- o 외국인(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적응 프로그램
- ㅇ 일반적인 민원 및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상담사업
  - \* 지역주민 대상 민원 서비스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 ㅇ 취업지원센터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원사업

#### ⑤ 고용장려금

- 취업취약계층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고용 지원,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 보조금 사업
- (고용창출형)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실업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사업
- \* (예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채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고용유지형) 산업구조조정,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실직 위험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
- \* (예시)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 (고용안정형) 정규직 전환, 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용 불안을 경험하는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 (예시)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모성보호형) 출산·육아 중인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
- \* (예시) 출산 육아 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보조금 지원사업 등

#### 《고용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사업담당자는 아래 사업예시를 참고하여 고용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o 고용과 무관하게 기업·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ㅇ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의 운영비 지원사업

#### ③ 창업지원

- ㅇ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시설·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 (창업 초기지원)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 창업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해 창업보육과 정책대상의 기술경영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
-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계획 수립에서 창업까지 전 단계를 지원
- (인프라)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시설, 시 제품 제작시설, 비즈니스 센터 등 창업공간을 지원하거나 창업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등 창업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
- (창업금융)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에게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투 · 융자하는 사업

#### 참고 일반적 경영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 창업지워 사업유형은 "창업 이전" → "창업 초기지워" → "창업 후 초기 유지" 등 창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만 포함
- 단순히 중소기업 등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금전의 경우 창업지원 유형에 포함하지 않음

####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ㅇ 근로능력은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 \* 실업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임금채권 보장 사업 등이 해당

#### ③ 지원고용 및 재활

○ 장애인 또는 사고 ·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 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조치

## 붙임 2 중앙부처 인턴십 사업 민간위탁 운영 가이드라인

#### ① 민간위탁사업 개요

- ㅇ 위탁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규정, 참여 주체별 역할 등 명시
- ❖(예시) 사업목적, 관련법령,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 위탁내용, 업무추진체계 등

#### ②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 0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수탁기관의 적정한 기구·인력 등 명시
- ♦(예시) 자격요건, 시설요건, 인적요건, 결격사유, 재정부담능력,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 ③ 위탁계약 해지 기준

- o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 등 명시
- ❖(예시) 위탁계약 해지 사유, 위탁계약 해지시 조치사항(참여자 이관, 문서 반납·폐기) 등

#### ④ 위탁업무 처리절차

- ㅇ 위탁사무의 공정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업무처리절차 등 명시
- ❖(예시) 참여자 모집 워칙·절차. 위탁업무 처리절차. 참여자의 법적지위 및 근로조건. 위탁수수료 산정·신청·지급·반납 등

#### ⑤ 부정수급 조치

- ㅇ 수탁기관 등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조치사항 등 명시
- ❖(예시) 부정수급 개념 및 유형,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수탁기관·참여기업·참여자 제재조치, 부당인출 및 횡령 등

#### 6 지도 · 점검

- ㅇ 위탁사무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지도 점검 사항 등 명시
- ❖(예시) 지도·점검의 방법·횟수·시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임금지급 등) 등

### 붙임 3

# 2025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안)

## ① 직접일자리사업 (21개)

연 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부유형
1	국유청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지원(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노동시장이행형
2	국유청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국가유산 산업 인턴지원)	노동시장이행형
3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원(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노동시장이행형
4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사회봉사복지형
5	문체부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노동시장이행형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사회봉사복지형
6	문체부	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노동시장이행형
7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동시장이행형
8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 외 나머지사업)	사회봉사복지형
9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노동시장이행형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노동시장이행형
10		산림서비스 도우미(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노동시장이행형
11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노동시장이행형
12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노동시장이행형
13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노동시장이행형
14	산림청	임도시설(임도관리단)	노동시장이행형
15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인턴운영)]	노동시장이행형

연 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세부유형
16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특별시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노동시장이행형
17	해경청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국민참여형연안안전활동(민간연안 안전지킴이)]	노동시장이행형
18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노동시장이행형
19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노동시장이행형
20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자치단체 지원)	노동시장이행형
21	환경부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노동시장이행형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노동시장이행형

# ② 직업훈련 (37개)

연 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일반)(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고특화훈련)	
		내일배움카드(일반)(첨단산업디지털기초역량훈련)	
		내일배움카드(일반)(돌봄서비스 훈련)	
2	고용부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다기능기술자과정)	
2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학과신설 및 개편)	
3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고용부	내일배움카드(고보)(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4		내일배움카드(고보)(일반직종 훈련)	
		내일배움카드(고보)(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5	고용부	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6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연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u>번</u> 7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8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전문기술과정)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하이테크과정)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신중년특화과정)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여성재취업훈련)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소규모사업장훈련)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이주배경구직자훈련)	
9	과기부	인재활용확산지원(R&D)[산학연협력 연구기반 인력양성(계약정원제 석사)]	
10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R&D)(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지원)	
	과기부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	
11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채용연계형SW전문인재양성)	
12	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클라우드 생태계 조성-개발자 기술교육)]	
13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R&D)(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14	국토부	자동차 튜닝 인증 기술지원(튜닝 교육 및 컨설팅)	
15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보육운영비)	
16	농식품부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스마트팜 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운영)	
17	문체부	게임산업육성[게임산업 정책 지원(게임전문학교(게임인재원) 운영)]	
18	문체부	MICE산업육성지원[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MICE인력양성 및 업계 지원 - MICE산학연계 및 일자리 창출)]	
19	문체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관광전문인력양성)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종사원 전문 역량강화(관통사 특화 관광 전문교육, 관광안내인력 교육)	
20	문체부	광고산업 활성화[광고전문인력양성(1인광콘텐츠 창작자 지원, 글로벌 광고인재 양성)]	

연 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1	문체부	영화정책지원(영화인역량강화 교육지원)	
22	문체부	예술의 산업화 추진[예술사업인력양성(예술산업아카데미운영)]	
23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육성(방송영상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24	방사청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25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취창업지원비(위탁교육비)]	
26	산업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27	산업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바이오인력양성사업)	
27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28	산업부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재직자맞춤형 전문기술교육)	
29	산업부	성유패션사업활성화기반마련[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 (일자리창출·창업지원 및 현장애로해소지원(수요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30	산업부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	
31	산업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	
32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33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	
34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제외)]	
35	중기부	연수사업	
36	해수부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선박관리전문가 양성)	
37	환경부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전문인력 양성)	

# ③ 고용서비스 (39개)

연 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	<u> </u>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3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4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촉진[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위탁), 구직자취업역량강화(위탁, 직접)]				
5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6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7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직정적응지원)				
8	고용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청년일경험지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청년도전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9	고용부	공정채용문화확산(공정채용인프라구축)				
10	고용부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1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12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13	고용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4	고용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15	고용부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16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17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균특)				

СП		
연 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8	고용부	산업·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
	-01	산업·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산업·일자리전환분석센터)
19	고용부	중장년 인턴제 지원
20	과기부	자립준비청년디지털진로지원
21	과기부	인재활용확산지원(R&D)[산학연협력 연구기반 인력양성(시니어 과기인 경력이음)]
22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3	보훈부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24	보훈부	취업지원[국가유공자 취업지원(통합)]
25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26	국토부	건축문화진흥(건축설계 인재육성)
27	농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농촌인력중개센터)
28	문체부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은퇴선수지원)
29	문체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체육인 직업안정지원(지도자연수형, 취업지원형)]
30	문체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관광산업일자리활성화(관광산업일자 리박람회, 관광일자리센터 및 관광전문이력 포털 운영)]
31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취창업지원비(취업지원비)]
32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지원)
33	산업부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 지원[FTA 전문인력 양성(취업연계형 FTA 실무과정)]
34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센터운영지원)]
35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36	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3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38	해수부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선원직업안정사업(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39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일자리창출 및 기술지원(일자리지원센터)]

# ④ 고용장려금 (22개)

연 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3	고용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5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직장어린이집지원(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6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O	<del></del>	직장어린이집지원(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7	고용부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7	고용구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배우자출산휴가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휴직급여)				
8	784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0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기근로시간단축)				
		모성보호육아지원(유산사산휴가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난임치료휴가급여)				

연 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				
9		고용창출장려금[장년고용지원(신중년적합직무 고용 지원)]				
9	T-0-T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국내복귀기업 지원)				
10	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1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12	고용부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계속고용, 장년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지원금)				
	T-0-T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고용지원금)				
13	고용부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14	고용부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15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급 지원(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1유형)				
16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7	농식품부	농식품 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온라인모바일 마케팅-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육성)				
18	농식품부	식품산업인프라강화[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사업(식품외식기업청년인턴십)]				
19	산업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20	중기부	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21	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22	해수부	국적해기사 일자리 지원				

# ⑤ 창업지원 (26개)

연 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과기부	ICT창의기업육성(ICT혁신기업멘토링프로그램운영)			
2	교육부	대학 창업 활성화(대학 창업펀드조성)			
3	기상청	기상산업 활성화[기상기업지원(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4	농식품부	농식품벤처차업활성화지원			
5	농식품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비지니스지원 활성화(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			
6	문체부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7	문체부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8	문체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일자리 창업지원)			
9	문체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체육인 직업안정지원(창업지원형)]			
10	중기부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교육멘토링)]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여성벤처활성화지원)			
11		벤처기업경쟁력강화(아기유니콘육성)			
12	중기부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지역창업특화지원(중장년기술창업센터)]			
13	중기부	창업인프라지원(창업보육센터지원)			
14	중기부	중소기업 재기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			
15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16	중기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재창업자금)			
17	중기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구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18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연 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9	중기부	여성기업육성(여성창업지원)
20	중기부	민관협력창업자육성(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지원, 글로벌기업협업)
21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TIPS)
22	특허청	IP활용 창업·성장 지원(IP디딤돌 프로그램)
23	해수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24	해수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25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상생기반대응형)
26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청년 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6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2개)

연 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가사근로자 고용지원개선사업)			
2	고용부	실업크레딧지원(일반)			
3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4	고용부	구직급여			
5	고용부	실업크레딧지원(고보)			
6	고용부	자영업자실업급여			
7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8	고용부	대지급금지급			

연 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9	고용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10	보훈부	제대군인전직지원금(제대군인전직지원금))				
11	중기부	소상공인재기지원(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				
12	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 기 지원고용 및 재활(11개)

연 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2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장려금)			
	<u> </u>	장애인고용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3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4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5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6	고용부	부 장애인취업지원			
7	고용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8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9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10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1	중기부	장애인기업육성(장애인창업육성)			

# 붙임 4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u>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 것으로</u>, 아래 제시한 정책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음

###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개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지원요건) "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별 지원요건〉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l 유형	<b>요건심사형</b>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3444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b>선발형</b>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청년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	중위소득 120%↓	5억원 이하	무관
II유형			15~69세	중위소득 100% ↓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sup>①</sup>직업훈련・일경험 프로 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구직활동기간 중 <sup>②</sup>구직촉진수당(월50만×6개월) 등 지급

취업 지원 (I·II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의지에 따른 <b>직업훈련·일경험·복</b>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선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구직활동	 !그램(생계, ! 설팅, 일자리정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영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소득지원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월50~90만원×6개월)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지원 제외,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취업활동비 지원 (II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최대 195.4만원) 지원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 ②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여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sup>+</sup>)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지원내용) 밀착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 그램 제공,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 훈련 등 연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구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기간
도전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단기 : 5주 이상
도전†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 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6개월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미참여, 구직 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기준 21점 이상인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신청방법) www.work24.go.kr(고용24>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청년도전지원사업)

### ③ 중장년내일센터(고용노동부)

- (개요) 40세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 이 (지원내용)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지원, 특화서비스, 사업주지원패키지 등
  - (생애경력설계) 참여자의 연령, 취업 여부, 종사업종 등을 고려하여 직업 역량, 가치관 분석을 통한 미래 경력대안 탐색 등
  - (전직 및 재취업지원) 퇴직(예정)자 대상 실직 불안감 해소 및 전직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전직스쿨프로그램, 구직자의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재도약프로그램,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등 제공
  - **(산업별·지자체 연계 특화서비스)** 지자체, 산업별협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 또는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
  - (사업주지원패키지) 일자리 컨설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 채용지원 전담반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o (지원대상) 40세 이상의 재직(퇴직예정)자, 구직자 및 사업주
- (신청방법) <sup>온라인</sup> 고용24(work24.go.kr, 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
   오프라인 인근 중장년내일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내「중장년 전담창구」(문의 ☎ 1350)

### ④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 (개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o (지원내용) 취업상담·알선, 전문기술, 기업맞춤훈련 등 직무훈련, 온라인 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임신·육아·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미취업상태이며,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
- (신청방법) <sup>온라인</sup> saeil.mogef.go.kr <sup>오프라인</sup> 거주지 인근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문의 ☎ 1544-1199)

### 5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개요) 장애인에게 장애인 특화 훈련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별로
   집중 지원하여 장애인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확대
- o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수당 지원
  - (1단계 취업지원 상담) 심층상담을 통한 구직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및 참여수당 지급(최대 15만원)
  - **(2단계 역량 강화 및 취업알선)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훈련지원** 및 훈련수 당 지급 (월 284천원, 최대 12개월) \* 공단 장애인 직업훈련과정은 최대 24개월
  - (3단계 취업 후 고용유지) 취업 유지기간(3,6,12개월)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지급(최대 150만원)
  - (구직활동 독려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충 참여자에게 구직 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o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구직 장애인
- (신청방법) <sup>오프라인</sup> 거주지 인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 ☎ 1588-1519)

# 붙임 5 구직등록방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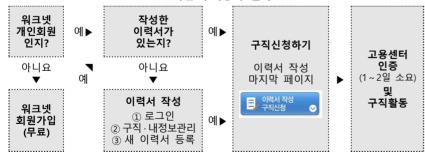
### ① 구직신청 개요

o 이력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의 구직인증을 거쳐야 하며, 인증된 구직자만이 워크넷에서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 가능

### ② 구직신청 방법

- o (**오프라인**) 구직등록을 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새일센터 등)에 제출
- 직접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지자체이거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구직신청서 제출 가능 (지침 45~47p 참조)
- (온라인) 워크넷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회원가입(무료) →
   로그인 후 '내정보 관리 → 구직신청 관리 → 새 이력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 → 취업희망사항 입력 후 '작성완료' 클릭
-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구직자 신원확인을 위해 전화 등으로 연락\* → 구직인증 후 워크넷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가능
  - \*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구직신청자와 1주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원확인 불가로 구직신청 수리가 거부됨에 유의

### <온라인 구직등록 절차>



- o (유효기간)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
  - \*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유효 기간 연장 가능

# 붙임 6 광역자치단체 일자리 총괄부서

연번	지역	소속	연락처
1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454
2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4376
3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053-803-3386
4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032-440-4234
5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062-613-1283
6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과	042-270-4561
7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관	052-229-2733
8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842
9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08-8111
10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033-249-2968
11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043-220-3355
12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3400
13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3214
14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061-286-5032
15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054-880-2687
16	경상남도	인력지원과	055-211-3373
17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6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각종 서식



### 서식1

### 직접일자리사업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직접일자리사업 참여용)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성 명	3.t.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주 소			전화번		랜드폰 변호 기재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	여부	① 돔의 ② 비돔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	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 일모아시스팀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 행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기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다 부족으로 참이	A자 선발이 (	어려운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	부 ① 해당 ② 해당	없음 세대원	수(세대주,	동거인제	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결혼이민자 □ 여성가 □ 위기청소년 □ 갱생보	THE RESIDENCE OF THE PARTY OF T			□ 북한이탈주민 개월 미만자 □ 노숙인	
취업여의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업, 자명업, 서비스업, 등어업, 일용직	
실업기	20 ~ 20 .	p.m.		, 무직, 7		
주 요	직장명	당	당당업무		재직기간	
경 력				-	*	
	자격증 / 2			취득 / 수료시점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b>①</b>	<b>②</b>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	명(	), 참여기간(	20	. ~ 20 )	
참여 희망사업	0		@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구작	사업참여 ( 역지원 프로그램		17 D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및 소득 심	사업 참여자 선정들 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			7.00	U- (8 110 -4 111	
※ 귀하는 7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u>동의</u>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u>0/</u> -1 M2 T	WD5 5		No.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업계 포함), 구직등록, 계약 제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_ T B. 013	<u> 다이들을 개인으로 응극 못 보유'이름기인</u>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피스하다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구 또는 준영구						
필수항목	<b>(가구원)</b>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참여자 선정종료시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동의일로부터 <u>10년</u>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 여부	동의일로부터 <u>10년</u>						

- 통합 시행하 세43소의2에 근거에 나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사 '개인정보로요합', 제1/소 및 제18소에 따라 통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보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후부, 국세정 지방자치단체, 하근고용정보위, 국민건강보험교단, 하구사업이력공단, 대하상공회의소 국민연음공단, 장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발청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조시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제공 목적: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를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이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공받는 자의 개안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제공기판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발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제공받는 자의 개안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제공기판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발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제공받는 자의 개안정보 항목: (본인) 청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발 지급액, 제공반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 교유번호 교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기상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그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목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보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구합니다. 구원 의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보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교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영구 또는 조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청종로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생각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생각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위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고고 마시테시티 시오 코크 H시 센코코티 케이크 레고 스크카/

1	(공중 마이테이터 이용 판단 돈인 행성정보 제3사 제공 요구서>								
	보유기관	명칭	항목	보유기관	명칭	항목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 (세대원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한국/120명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 구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성명	국민연금 공단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 가입시작 기간년월, 기간종년월			
	국방부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수급증명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번호, 꾸민동락변호/영연급증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내역정보	연금종류,증서번호,주민등록번호, 성명실지급액연금월액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급여종류,연금신청월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국민건강 보험공단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샹실일			

		제3자
이용기관	제공목적	보유기간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완료까지 및 선발완료 후 10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참여자 관리 취압지원저비스 제공.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일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본인은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상기의 본인 정보 보유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선발을 위한 본인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본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기관장 귀하

(날인/서명)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식2

접수번호

# 온라인 신청서 표준양식

### 사업(직접일자리사업 참여용) 참여 신청서

(신청일자: 20 . . )

(날인/서명)

성명				수민 (외국)	등록 면호 (등록번호)		
주소				전	화번호	핸드폰 변 입력 가능	호 입력 시 선택
핸드폰번호				수산	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이메일주소	Ť			수신	동의여부	① Eº	② 비동의
* 일모아시:	스템의 다른	위한 SMS 수신 등 일자리사업에서 신 연락처로 참여제의	청자 부족	으로 참여자	선발이	① 동의	1 ② 비동의
세대주 0	부	① 해당 ② 해	당없음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	인 제외)	5
취업취약계층 여부	□ 결혼이 □ 경생보3	인자 □ 여성가정 토대상자 □ 수형자로	Marine Took	성매매파해자 6개월 미만지	□ 북한이 □ 노숙인		□ 위기청소년
학 력		학교명	전공		재학기간	ŀ	비고
(선택사항)				_			1
<b>Φ</b> Ω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주 요 경 력							¥
		자격증 / 교육 명				독 / 수료/	니점
자격증 또는 광려 교육 이주 여부		3.5 m345-3 (1400)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선택사함)	<b>③</b>		2		(3	0	
작업복 사이즈 (선택사항)	상의 :		하의 :		신	<b>≝</b> (mm) :	
	고자, 관계인 보호법*에	사업 참여자 의 재산 및 소득 따라 "개인정보 수	심사 자료	로 활용됩	니다.		171
	개인정보자	공에 대하여 동의 사업 참여자					경우

자기소개서 (선택사항)	
	X1
-101F-11 - 151V-14	
지원동기 (선택사항)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식3 표준근로계약서

# ᄑᄌᄀᄅ게야너

	프군근도계약시			
(이하 "사업주"리 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나 함)과(와) <u> </u>	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시분부터 5. 근무일/휴일 : 매주일(또는 - (대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	는 매일단위)근무, 주휴		분)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 상여금 : 있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원 ( ), 없음 ( ) 원,	_원, 없음 (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	를 매일)일(유잍	실의 경우는 전일 ] 예금통장에 입금(	<u>원</u> 지급)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		
<ul><li>9. 근로계약서 교부</li><li>-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li><li>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li></ul>			<u></u> 라의	교부
<ul><li>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li><li>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이행하여야 함</li></ul>	실한 이행의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1 성실	하거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형	당은 근로기준법령에 <i>9</i>	의함		
	년 월 일	<u>]</u>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 주 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 주 소: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b> </b>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 (대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o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월, 화, 수, 목, 금요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o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o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o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3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16:00~16:30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서식4

### 구직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3. 17.>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 구직신청서(상용직용)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작성란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1 일)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구직신청서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회망자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청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이나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마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인의 개인정보	면 수집ㆍ이용 등이	∥ 관한 사항을 읽고 등	동의 여부를 격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b>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b> 하는 것에 동 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작자 취업화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화상의 구작정보, 고용보험 기업 이런, 구작급여 등 수급 이런, 작업환연 이런, 자격정보 및 자원반은 각종 고용사비스 내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유한나다. 동의하기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사비스 제공에 일부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b>워크넷을 통해 공개</b> 하는 것에 대하여 <b>동의</b> 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 ※ 예 이를 설벽 나이 직종 희망의급 희망근무지역 경력 화력 등이 기억 인사단당자에게 제공됩니다

П	취업지원과	과려되	사하은	의고	도의	여부름	작성 하시기	바라니다
$\Box$	뀌답시전시	그만만	시 S 드	27	$\sim$	거ㅜㄹ	78971	-14-1-1

1.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일용근로를 희망하는지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2.	구직신청의 목적(이유)
	[ ] 취업알선 [ ] 구직급여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직업훈련 [ ] 기타( )
3.	취업알선 희망시기 [ ] 즉시 [ ] 대기 기간 필요 ( 년 월 일까지)
	※ 직업후련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 차여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취업희망풀 가입 동의 여부(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및 도서지역거주자만 해당합니다)
	동의([ ] 여성가장 [ ] 중증장애인 [ ] 섬 지역 거주자 [ ] 희망하지 않음)
	※ 취업회망품에 가입하여 고용센터 등의 구직일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회망자는 가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²) 또는 중질지(80 g/m²)]

(뒤쪽)

※ 아래의 사항은 모두 전고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한니다

/• .	-1-4 1 10								
اه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거주지)							
인 적	주 소								
사	전화번호		휴대전화						
항	전자우편		알림수신 설정	[ ] 전자우편 [	] 문자 서비스				
학 려	리조취급	전공(부전공	)	재학기간	~				
학 려 사 항	최종학력	[ ]졸업(예정) [ ]수료 [ ]지	학 [ ]휴학 [	]중퇴 []검정고	!시 [ ]무학				
희		직종명 희망입사형태	대 (경력기간)	희망 세부	직무내용				
희 망 취 업 조		[ ]신입 [ ] 력	경 ( 년 개월)						
업 조 건	희망직종	[ ]신입 [ ] 력	경 ( 년 개월)						
		[ ]신입 [ ] 력	경 ( 년 개월)						
	근무지역	1순위 ( )시・도 ( )구・군	2순위 ( )시 · <u>[</u>	도 ( )구・군 [	] 지역무관				
	희망임금	[ ] 연봉[ ] 월급 [ ] 일급[	[ ] 연봉[ ] 월급 [ ] 일급 [ ] 시급 ( )원 이상 능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 ] 시간(선택계약 제							
	고용형태 (복수선택 가능)	[ ] 교대제 근무 [ ] 파견근 없음	로 []대체 인	력* [ ] 관계 [ 명	] 재택근무 희				
		* 출산휴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	른 대체 인력을 말합니다						
		근무가능(희망)시간 ( : ~ : ), ( : ~ : )							

### □ 선택 작성 사항

※ 아래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고,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퀴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	-기간		
직	경력사항					년	월	~	년	월
정						년	월	~	년	월
보	보유자격			(년	월 일취	득, 발급	급기관:			)
추	(면허)			(년	월 일취	득, 발급	급기관:			)
가 확	피오충러	훈련 과정명	훈련	기간	세부	훈련내-	용	훈련	기관	명
	교육훈련 이수현황		년 월 ~	~ 년 월						
인	이구연광		년 월 ~	~ 년 월						
사	전산	[] 문서 작성 [	] 스프레드시트	트 [] 프러	젠테이션	운전	[]	운전면	현증	<u>-</u>
항	활용능력	[]회계프로그림	[]기타(		)	능력	[]	차량 :	소지	자
	01701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병 명칭	응시	시일	등급	• 점	수
	외국어	]	]상[]중[]하	-		년	월 일		급(	점)
	능력	[	]상[]중[]하	-		년	월 일		급(	점)
	병역대체	[ ] 신업기능요원 ;	] 현역병 입영대상	자 [ ] 정	- - - - - - - - - - - - - - - - - - -	국외	취업	г 1	희민	L.
	근무희망		] 보충역 대상기	다 [122	5인丁프런	희망	여부	l I	의 근	5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 서식5 일모아 시스템 권한신청 양식

■ 일모아 시스템 권한 신청서 양식

# 일모아 시스템 권한신청서

① 신 청 구 분	권한관리자 권한		
② 소 속 기 관		③ 성명	
④ 부 서 명		⑤ 직 책	
⑥ 전자우편주소			
⑦ 전 화 번 호		⑧ Fax 번호	
② H 고			

일모아 시스템 사용을 위해 위와 같이 시스템 이용권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 하

# 서식6

# 직접일자리사업 통합공고를 위한 제출양식

# <총괄표 양식(예시)>

사업명	사업 담당자	급여 수준 (원)	모집 지역	채용 예정 인원	모집 기간	근로 시간	지원방법 및 제출처
사업명	사업담당자 이름, 연락처 기재	시급 또는 일급 (월급여 환산 시 금액도 기재)	지역 명시	실제 채용 인원	정확한 날짜를 기입	주 00시간 (일 0시간)	웹사이트 주소, 서류 제출처, 접수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서울	150			
			대구	150			
			인천	200			· www.iljari.go.kr에서
			대전	120			자세한 정보 확인 및
			경기	90			신청 양식 다운로드
(예시)			강원	90			(044-202-1234)
일자리사업		시급 9,860원 (월 2,060,740원)	충북	60	'24. 1. 10. ~ 1. 24.	주 40시간 (1일 8시간)	· 신청서 및 서류
르시니시 ㅂ		(= 2,000,740 E)	충남	80	1. 24.		제출은
			전북	70			job_untact@korea.kr 또는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팀으로 제출
			전남	70			
			경북	80			
			경남	70			
			제주	30			
					-		
					1		
					-		
					-		
					-		
		1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담당자 연락처 000부 000과 성함 (む)044-000-0000

ㅇ 사업 목적 및 내용 2줄 이내 작성

□ 근로지역 및 모집기간(근로지역 및 해당 지역 모집기간 상세 기입)

※ 모집지역이 다수인 경우 모집지역 모두 기재

※ 같은 지역에서 모집을 1차, 2차 등에 수차례 진행시 해당 모집기간 모두 기재

※ 모집지역이 전국일 경우 '전국'으로 기재

※ 채용 예정 인원이 미정인 경우 '미정'으로 기재

모집 지역	채용 예정 인원	모집 기간
- 광역(기초)	- 해당 지역 채용 계획 인원	- 광역(기초) 지역 별 모집
- 경식(기소) 	정리(명)	기간(월, 일 단위까지 기입)

### □ 근무조건

- ㅇ 업무내용 :
  - ① 사업 내 주요 업무별 업무내용 기입
  - (2)
  - (3)

### ㅇ 시급 :

① 주요 업무별 시급(월급여 : 원)(주급, 일급 등 업무별로 급여가 달리 지급되는 경우 업무별 급여 별도 기입)

(2)

(3)

# ㅇ 근로시간 :

① 주요 업무별 근로시간(주~회, 월~시간 등 업무내용 별 근로시간 기입)

2

(3)

# □ 지원자격(우대조건)

이 해당 사업 참여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정리

\*

#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신청 방식 정리(온라인 신청 시 관련 홈페이지 기입)

# 서식7

# 국민취업지원제도 성실참여 확인서(직접일자리 재참여 희망자용)

- 위 참여자는 20 . . . ~ 20 . . .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성실히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최소 I유형 9개월, II유형 6개월) 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정상적으로 이행 및 종료하였음
- \* (예) 집단상담·취업특강·채용박람회 참여, 취업지원기관이 알선한 직장에 면접 등 구직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구직활동의무 불이행, 연락두절 등 본인의 귀책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사실이 없음